

## 제4장 원산지 규정

###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대체가능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원산지 목적상 어떠한 표시나 단순한 시각적 검사만으로는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구성품, 부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이란 재료가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 제4.2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의 경우

- 가. 제4.3조에 따라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4-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는
- 다.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 제4.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 가. 그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그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그리고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인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그 밖의 생산물. 다만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를 개발할 권리<sup>1</sup>를 국제법<sup>2</sup>에 따라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그 당사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

<sup>1</sup> 양 당사국은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개발할 권리”는 당사국과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그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을 양해한다.

<sup>2</sup>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 2)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제4.4조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4.2조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4-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 규칙으로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이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40 퍼센트 이상이거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세번의 호 변경)에서 세 번변경이 이루어진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제4.2조나호의 목적상, RVC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가.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 제4.5조

####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 제4.6조 최소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다음의 공정이나 가공이 한번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 그리고 포장물의 재포장과 해체 및 조립
-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나 방직용 섬유 제품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 카.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유사한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 혼합<sup>3</sup>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 거.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너.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 더. 동물의 도살<sup>4</sup>

2. 제1항의 목적상, 단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공정이나 가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정이나 가공을 말한다.

3.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 제4.7조 원산지 누적

---

<sup>3</sup> 단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sup>4</sup>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과 저장 및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이나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후속 처리를 말한다.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 제4.8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쪽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양 당사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다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9조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 제4.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언급된 상품의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 제4.11조

#####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12조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여겨지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나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제4.13조

#####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및 안전장비와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제4.14조

##### 대체가능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이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한다.

#### 제4.15조

#####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제4.16조**

##### **원산지 증명**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신청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원산지 운영 절차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제4.17조**

##### **특혜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관련 요건의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18조**

## 비밀유지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속서 4-가의 규칙 15에 따라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기밀 사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합의에 따라, 기밀 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을 목적으로만 한쪽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개될 수 있다.

## 제4.19조

###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이나 제재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 제4.20조

###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통관 통제 하에 세관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발효 후 3개월까지 소급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제4.21조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전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수정의 결과로 부속서 4-나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전환의 목적상,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수정본의 발효 전에,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부속서 4-나의 갱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의를 수행한다.
- 나. 양 당사국은 부속서 4-나의 전환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손상하지 않고 수행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 다. 공동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의 전환을 채택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은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부속서 4-나의 채택된 전환 문서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 **제4.22조**

##### **협의**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한다.

#### **제4.23조**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양 당사국은 제5.21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에 따라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4.24조**

##### **검토 및 수정**

1. 이 장은 필요한 경우와 시기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으며,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대로의 검토 및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 장의 부속서 및 부록은 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그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